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7 제출년월일 : 2022. 7.

제 출 자: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편차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 제고 개선 사항을 이행하고자 과태료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금연구역 지정 근거 및 신설(안 제5조)

나. 흡연구역 표시 및 설치 기준·방법 추가(안 제7조)

다. 금연사업 등 공헌한 군민, 단체 포상 지급 관련 신설(안 제9조)

라. 과태료 인상 및 징수절차 안내 개정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2.05.09. ~ 2022.05.29.) 결과: 의견제출 없음

2) 규제심사: 비규제 대상

3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의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
- 3.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
- 5.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흡연구역의 지정)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(이하 "흡연구역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, 흡연구역임을 잘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의 설치 기준·방법은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」 별표2에 따른다.

제9조제3항 중 "표창할 수 있다"를 "대하여 「평창군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"를 "「국민건강증진

법」 제3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군	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
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	
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	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	
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	
지정할 수 있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학교보건법」에 따른 학교	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
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	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
화구역	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
	역
3. 평창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	3.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
류소	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	5. <u>가스충전소 및 주유소</u>
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	
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	
하다고 인정하는 장소	
<u><신 설></u>	<u>6. (종전 제5호와 같음)</u>
제7조(흡연구역의 지정) 제5조제1	제7조(흡연구역의 지정) <u>①</u>
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	
는 장소의 <u>소유자</u> 또는 관리자	<u>소유자·점유자</u>

치·운영할 수 있다. <후단 신 설>

는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 --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흡연 구역 또는 흡연실(이하 "흡연구 역"이라 한다)을 설치---. 이 경우, 흡연구역임을 잘 알 수 있 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

<u><</u>신 설>

제9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 제9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 ① · ② (생 략)

- 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 | ③ ------연사업에 공헌한 군민. 단체 등 에 표창할 수 있다.
- 제10조(과태료) ① 군수는 제5조 제10조(과태료) ① -----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 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<u>3만원의</u>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 의 설치 기준·방법은 「국민건 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다.

-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-- 대하여 「평창군포상조례」

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----- 「국민건 강증진법」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

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 른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

-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⑨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 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- 1.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
- 2.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·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

제34조(과태료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
- 2.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□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」 제6조 제4항의 별표2

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·방법(제6조제4항 관련)

1.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

가. 표지 부착

- 1)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.
- 2)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정된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 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.
- 3)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, 그 외 계단,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.
- 4)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, 벽면, 보도(步道)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.
- 5)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 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.

나. 표지 내용

1)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가)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

(예시)



나) 위반시 조치사항

(예시)

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,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,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- 2)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,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.
- 3)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, 일본어,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.
- 4)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.
 - :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○○○ ○○○○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2.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

가. 흡연실의 설치 위치

- 1) 법 제9조제4항제6호, 제8호, 제9호, 제10호, 제11호,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·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2)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)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 되,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.

나. 흡연실의 표지 부착

1)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.

흡 연 실

(예시)

- 2)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,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.
- 3)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, 일본어,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.
- 4)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,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.

다. 흡연실의 설치 방법

- 1)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,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 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- 2)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, 화장실, 복도,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)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4)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이현진
연락처	(033) 330 -4820